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9차) (한시적 적용방법 총료)

※ (재가급여) 2023년, 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기준

※ (시설급여)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

※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8차)'에서 수정·추가 한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기

2024. 5.

□ 배경

○ 2024.5.1.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 종료 안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 ... 질병관리청



※ 2024.5.1.부로 '경계' →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

□ 주요 변경사항

○ 2024.6월부터 기존의 평가기준 적용

급여종류	주요내용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5월 '경계' → '관심'으로 변경 (5.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 종료<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료월: 2024.5월- 기존 평가기준 적용: 2024.6월~※ '24년 반기 및 분기별 시행 지표 미실시한 경우 한시적 예외 적용 불가, 기존의 평가매뉴얼의 평가지표(기준) 적용

□ 기본원칙

○ 2020.1.부터 2024.5.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다빈도 질의사항을 반영한 한시적 예외 적용 기준 안내

○ 일반사항(급여종류 전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에 따라 평가기준 예외 적용

- '주의' 이하의 단계일 경우 기존의 평가기준 적용
-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 자제, 외출·외박 제한 (외부인 출입제한, 보호자에게 방문자제 안내문자 전송) 등으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평가지표 중 일부 한시적 예외 기준 적용 ... **【붙임】 참조**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변경 시 평가지표 적용 방법

-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 월의 익월부터 기존의 평가지표(기준) 및 평가매뉴얼 적용함

(기존 평가지표 적용기간 안내)

- '24년 5월 '경계' → '관심'으로 변경
: '24년6월부터 반기·분기별 시행 지표 기존 평가지표(기준)대로 동일하게 적용
※ 반기별 및 분기별 지표 실시한 경우 인정
→ '24년 상반기(1-6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

-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 시 충족으로 일괄 인정되는 기준은 없음

- 확진자 발생 및 코호트 격리로 시설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확인
※ 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코로나19 관련 치료 내역 등 증빙 필수
⇒ '22.3월부터 격리통지 간소화에 따른 문자 또는 SNS 통지 등도 인정
- 근거자료 등으로 증명된 사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기준에 대해 격리 기간 동안 완화하여 평가

○ 지표별 적용방법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하며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정상 적용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 지표별 적용방법은 안내차수(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이하로 변경되지 않을 시 연속하여 적용예정
- 감염병 유행상황 및 정부 부처의 정책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적용 차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안내함

□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경로

- 연번1~8: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연번9: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평가 > 평가 매뉴얼 및 Q&A

연번	게시번호	등록일	제목
1	60437	2020.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2	60451	2020.2.2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2차)
3	60509	2020.6.1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3차) 안내
4	60561	2020.10.27.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4차) 안내
5	60606	2021.2.1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5차) 안내
6	60693	2021.9.16.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6차) 안내
7	60755	2022.2.10.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7차) 안내
8	60777	2022.3.10.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7차 수정) 안내
9	공지	2023.7.11.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8차) 안내

※ 동일한 평가지표인 경우에도 안내 차수에 따라 적용기간이 다르므로 유의

□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9차) 주요 변경사항

급여종류	주요 변경사항
전체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 종료 - 종료월: 2024.5월 - 기존 평가기준 적용: 2024.6월~

□ 평가지표별 한시적 적용방법(1~9차) ... 다빈도 질의사항 **【붙임】** 참고

○ 재가급여

연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지표명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1	요(2), 목(2), 간(2)	직원회의	1차	감염병 관련 증상이 없는 직원 중 50% 이상을 매월 1회 이상 소 집하여 회의하거나 소규모로 회의를 실시하여야 인정함	~'20.1월
			2차	해당월 근무 직원의 50% 이상을 매월 1회 이상 유선 등 방 법으로 회의를 실시한 경우 인정함	'20.2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2	요(4), 목(4), 간(4),	건강검진	5차	2020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실시가능 (이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인정) ※ 단,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예외규정 없음	'21년 상반기

연 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지표 명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주(7), 단(7)		7차	2021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까지 실시가능 (이 경우 2021년, 2022년 모두 인정) ※ 단,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예외규정 없음	'22년 상반기
3	요(9), 목(9)	직무교육	6차	기준 직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무 교육 이수한 요양보호사로 비율 산정 (‘21.9.~12.) 감염병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 이상인 경우 한시적으로 자체교육을 통하여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요양보호사를 직무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1) 공단 홈페이지 ‘종사자 교육’에 게시한 교재,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 교육을 실시 2) 교육일지 작성 및 필수사항 모두 충족 ※ 교육일지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내용, 강사명 및 직책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이수자명, 이수자 서명 3)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까지 완료 ※ 게시경로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알림자료실→종사자 교육→’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자체 교육) 관련 안내	'21년 9월~ '21년 12월
4	요(15), 목(16), 간(16)	방문상담 관리	1차	감염병 관련 유사 증상이 직원(또는 수급자 등)에게 나타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도 실시하여도 인정함	'20.2월~ '23.7월
			8차	감염병 관련 직원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도 인정함 ※ 확진 확인 관련 서류: 소견서, 확인서, 진단서등 확진 증명 필요 ※ 확진일이 포함된 월은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 그 외는 방문상담 실시	'23.8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5	요(28),목(30), 간(29), 주(43),단(41)	사례관리	1차	2인 이상 참여시 인정하므로 사례관리 회의를 미실시하는 경우 불인정함	기존 동일
6	주(3), 단(3)	지역사회 자원활용	1차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20.2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7	주(22), 단(22)	소방시설	3차	소규모 또는 서면 교육 등 교육실시하여야하며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이 확인하여 인정함	'20.6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8	주(23), 단(23)	재난상황 대응훈련	3차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함	'20년 상반기~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연 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지표 명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9	주(27)	가족과의 소통	1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보호자 회의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되는 경우 인정함 ※ 사실관계(보호자 회의 관련 내·외부 공문 등)	~'20년 상반기
			3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보호자 회의를 대면하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을 확인하여 인정 함 ※ 필수사항 :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20년 하반기~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10	주(38)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0.2월
			2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 함	'20.2월~ '21.9월
			6차	(20.2.~'21.9.) 코로나19 사유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 확인하여 인정 (21.10.~)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각각 주 1회 이상 /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반기별 1회 이상 제공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 및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각각 주 1회 이상,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21.10월~ '22년 2월
			7차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 (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안내)사항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22.1월~ '22.2월
			7차 수정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마스크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간 거리두기 등)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각각 주 1회 이상,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비교적 비밀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함 ※ 단,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 다만,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 (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사항(안내문, 메일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22.3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연 번	급여종류 (지표번호)	지표 명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11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1차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0.2월
			2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함	'20.2월~ '21.9월
			6차	(‘20.2.’~‘21.9.’) 코로나19 사유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 확인하여 인정 (‘21.10.’~)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 각각 주 1회 이상 제공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 및 마스크를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각각 주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21.10월~ '22년 2월
			7차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안내)사항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22.1월~ '22년 2월
			7차 수정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마스크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 실시, 사람간 거리두기 등)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프로그램은 각각 주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함 ※ 단,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 다만,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사항 (안내문, 메일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22.3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12	복(15)	수급자 상담관리	1차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 경우로 인정하여 방문 상담을 유선상담으로 실시하여도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20.2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 시설급여

연번	지표 번호	평가 요소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1	3(3)	운영 위원회	1-2차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20년 2분기 (2~6월)
			3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를 대면하여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함 ※ 확인사항: 일자, 회의방법, 회의내용(안건, 참석자별 의견 등), 참석자 ※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여 및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대면 방법 개최 시 참석자 서명은 확인하지 않음	'20년 3분기~ (7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	7(6)	인적 자원 개발	4차	기준④의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장기요양 직무관련 교육 을 현장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기존의 실시계획, 이수증, 교육비 납부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이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교육 주최 기관에서 발송한 실시 관련 공문, 교육주최기관 홈페이지 주소, 교육이수 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자 등을 별도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 불인정	'20년~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3	8(7)	건강 검진	5차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0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1년 6월까지 실시가능 (이 경우 2020년, 2021년 모두 인정) ※ 단,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예외규정 없음	'21년 상반기
			7차	2021년 건강검진 대상은 2022년 6월까지 실시가능 (이 경우 2021년, 2022년 모두 인정) ※ 단,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예외규정 없음	'22년 상반기
4	12(11)	지역 사회 자원 활용	1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함 ※ 기존 20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기준①~③ 내용과 동일	'20.2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5	22(21)	재난 상황 대응	3차	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함	상반기~ ('20년~)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연번	지표 번호	평가 요소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6	27(26)	가족 및 지역사 회 교류	4차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함 ※ 기존 20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의 기준④에서 파생된 지표	'20년~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7	29(28)	노인 인권 보호	3차	3분기부터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다자간 영상회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서면 등의 방법으로라도 개최하여야 하므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개별적으로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에게 해당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1,2분기에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대표에게 의견을 수렴하거나 보호자 대표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기관운영에 반영한 경우도 인정함(연번1의 1-2차 참고)	'20년 3분기~ (7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8	33(32)	사례 관리	4차	사례회의의 시 특정 직종에서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대체할 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직종의 의견을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수렴하는 등 직종별 다양한 직원의 의견을 반영위해 노력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함 ※ 특정직종에서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하게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관계(관련 근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평가함	'20년~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9	39(38)	간호 및 의료 서비스	1차	계약의사(축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계·심각'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20.2월 ~20.10월
			4차	수급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해야 함 다만, 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계약의사가 방문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함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번호(6045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안)' 참조	'20.11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10	43(41), 44(42)	인지 기능 증진 서비스, 여가 활동 서비스	1차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0.2월
			2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	'20.2월~ '20.10월
			4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	'20.11월~ '22.2월

연번	지표 번호	평가 요소	차수	주요내용	적용기간
				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7차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안내) 사항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22.1월~ '22.2월
			7차 수정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마스크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실시, 사람간 거리두기 등)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함 ※ 단,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 확진자,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 다만,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사항(안내문, 메일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함 ※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22.3월~ '24.5월
			9차	기존 평가기준 적용	'24.6월~

◆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공통 : 일반사항

Q1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외부 인력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일반사항 ... 추가(3차)

Q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 예외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국내 최초 발생한 2020.1.20일을 주의 단계로 시작하여 2020.1.27. 경계단계, 2020.2.23. 부터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부터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안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수준 변화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안내 차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공통 : 요(2), 목(2), 간(2) 직원회의 ... 추가(2차)

Q3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로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데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나요?
A3	직원회의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회의는 해당월 근무 직원의 50% 이상 유선 등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공통 : 요(2), 목(2), 간(2) 직원회의

Q4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서면회의로 대체하거나 일부만 참석하여 직원 회의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참석 대상의 50%이상 참석하였는지 확인하나요?
A4	회의를 나누어 실시한 경우 누적 참석률이 50%이상일 경우 인정되므로 감염병 관련 증상이 없는 직원을 소집하여 회의하거나 소규모 회의를 실시해야 평가기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해당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자 및 격리자 등이 있다면 해당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누적참석률이 50%이상을 충족하여도 인정합니다.

공통 : 요(4), 목(4), 간(4), 주(7), 단(7) 건강검진 ... 추가(7차)

Q5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1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p>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급여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 2021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2년의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p> <p>(예시) 2021년 건강검진을 2022년 6월30일까지 검진 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022년 모두 건강검진 실시 인정 <p>※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불가</p>

공통 : 요(4), 목(4), 간(4), 주(7), 단(7) 건강검진 ... 추가(5차)

Q6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p>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급여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1년의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p> <p>(예시) 2020년 건강검진을 2021년 6월30일까지 검진 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021년 모두 건강검진 실시 인정 <p>※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불가</p>

공통 : 요(9), 목(9) 직무교육 ... 추가(6차)

Q7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신청하였는데 직무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교육이 취소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무교육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평가 시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7	<p>기존대로 직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의 필수사항을 모두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교육 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완료한 종사자는 직무교육 이수자로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p> <p>※ 교육일지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교육내용, 강사명 및 직책(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이수자명, 이수자 서명</p> <p>※ 설문조사 유의사항: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미참여 또는 오류/착오기재 등으로 교육 이수자 정보에 대한 식별 불가할 경우 교육 이수자 미인정</p>

공통 : 요(9), 목(9) 직무교육 ... 추가(6차)

Q8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소규모로 여러 번 나누어서 실시하여도 되나요?
A8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관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인원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 요(15), 목(16), 간(16) 방문상담관리 ... 추가(8차) '23.8월부터 적용

Q9	코로나19 상황에서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실시해야 하나요?
A9	<p>감염병 관련 직원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단 확진유무 확인위해 소견서, 확인서, 진단서 등 확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p> <p>※ 확진일이 포함된 월은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 그 외는 방문상담 실시</p>

공통 : 요(15), 목(16), 간(16) 방문상담관리 ... '23.7월까지 적용

Q10	코로나19로 수급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매월 상담이 불가능한데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0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거나 감염병 관련 유사 증상이 직원(또는 수급자 등)에게 나타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선상담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여도 인정합니다.

공통 : 요(28), 목(30), 간(29) 주(43), 단(41) 사례관리

Q11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되도록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 사례관리회의를 미루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 가능한가요?
A11	직종구분 없이 2인 이상 참여하여 수급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거나 수급자의 문제 및 욕구에 대한 문제해결 경험 등을 공유하더라도 사례관리 회의로 인정하므로 미실시한 경우 불인정 합니다.

공통 : 주(3), 단(3) 지역사회자원활용

Q12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12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공통 : 주(22), 단(22) 소방시설 ... 추가(3차)

Q13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직원 및 수급자가 모이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되나요?
A13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에 대한 직원 교육이 집합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소규모 또는 서면교육 형태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명, 내용)이 확인되어야 평가에서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공통 : 주(23), 단(23) 재난상황 대응훈련 ... 추가(3차)

Q14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4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이상의 단계일 경우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재난대응 도상훈련을 실시 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로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가 확인되어야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7) 가족과의 소통 ... 추가(3차)

Q15	코로나19로 보호자 회의를 반기별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 하나요?
A15	2020년 7월(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회의를 실시 하여야 하며,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되어야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필수사항) 일자, 시간,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서명(참석자명으로 같음)

주(27) 가족과의 소통

Q16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들이 모일 수 없는데 보호자 회의를 반드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A16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보호자 회의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7차 수정)

Q17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조치로 인한 외부인 출입 최소화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단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수정」 안내
A17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야간보호)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 각각 주 1회 이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반기별 1회 이상 단기보호)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 각각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각 프로그램의 실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확진자,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7차 수정)

Q18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프로그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A18	<p>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 소독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하에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합니다.</p> <p>※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확진자 관련 기록 확인하여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인정</p>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7차)

Q19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프로그램(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기관평가 시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9	<p>감염사태 확산우려로 인한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사항(안내문, 메일 등) 외부 증빙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p> <p>단,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p>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6차)

Q20	코로나19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20	<p>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p> <p>또한, 프로그램 제공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수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각 프로그램의 실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p> <p>주야간보호)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 각각 주 1회 이상 사회적응 프로그램 반기별 1회 이상 단기보호) 신체기능, 인지기능 프로그램 각각 주 1회 이상</p> <p>※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p>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6차)

Q21	<p>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그 내용을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전에 코로나19 사유로 프로그램을 미실시하였을 때에도 의견수렴 및 반영을 해야 하나요?</p>
A21	<p>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적용방법(2차)에 따라 코로나19 사유로 프로그램 미실시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기관의 조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p> <p>다만,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적용방법(6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21년 하반기부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수렴하고 차후 프로그램에 연 1회 이상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p>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 추가(2차)

Q22	<p>코로나19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p>
A22	<p>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p>

주(38) 프로그램, 단(38) 기능향상 프로그램

Q23	<p>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제공자가 외부인으로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 미실시하여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p>
A23	<p>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p>

복(15) 수급자 상담관리

Q24	<p>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수급자가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방문상담이 불가능한데 방문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p>
A24	<p>평가지표 13에 따라 매월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하나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인정되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정하여 유선상담만 실시한 경우에도 평가기준 충족한 것으로 적용합니다.</p>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일반사항

Q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부인이 방문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을 자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외부 인력이 기관을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할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 일반사항 ... 추가(3차)

Q2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 예외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는 국내 최초 발생한 2020.1.20일을 주의 단계로 시작하여 2020.1.27. 경계단계, 2020.2.23. 부터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단계부터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안내'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중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표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위기경보 수준 변화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안내 차수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 추가(4차)

Q3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대면하여 진행이 어려워 다자간 메시지를 이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나 일부 위원들이 모바일 메시지 사용이 어려워 일부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자간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3	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일부 위원이 모바일 메시지 사용이 어려워 서면과 모바일 메시지 사용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한다하더라도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석여부와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20년 1, 2분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적기준 및 지자체 지도 점검 사항은 다를 수 있음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 추가(3차)

Q4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4	<p>2020년 3분기부터 코로나19로 외부인이 기관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다자간 영상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이 경우에도 외부인사 중 1인 이상 참석여부와 회의록에 참석자 발언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p> <p>※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20년 1, 2분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법적기준 및 지자체 지도 점검 사항은 다를 수 있음</p>

평가지표 3(3) 운영위원회

Q5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다수가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평가에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5	<p>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p> <p>※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p> <p>※ 예시 : 2020년 3월 '경계'단계에서 '주의'로 변경 시 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미 실시하여도 인정됨(2020년 2월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 시 1분기 회의 실시해야함)</p>

평가지표 7(6) 인적자원개발 … 추가(4차)

Q6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집합) 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6	<p>코로나19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대면교육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기존의 실시계획, 수료증, 교육비 납부 영수증 등 온라인 이수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p> <p>※ 이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교육의 경우 교육 주최기관에서 발송한 실시 관련 공문, 교육주최기관 홈페이지 주소, 교육이수 일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수자 등을 별도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p> <p>※ 단,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시간으로는 인정되지 않음</p>

평가지표 8(7) 건강검진 ... 추가(7차)

Q7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1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p>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설급여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 2021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2년의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p> <p>(예시) 2021년 건강검진을 2022년 6월30일까지 검진 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022년 모두 건강검진 실시 인정 <p>※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불가</p>

평가지표 8(7) 건강검진 ... 추가(5차)

Q8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다보니 2020년 직원 건강검진 실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p>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설급여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 2020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했을 경우 2021년의 건강검진 결과도 중복 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p> <p>(예시) 2020년 건강검진을 2021년 6월30일까지 검진 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2021년 모두 건강검진 실시 인정 <p>※ 신규입사자 건강검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시작일자까지 입사 전 1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이 필요</p> <p>※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불가</p>

평가지표 12(11) 지역사회자원활용

Q9	메르스 때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9	<p>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되어 일시적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평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p> <p>※ 기존 2021년 매뉴얼 중 지표11(10)-기준①~③ 내용과 동일</p>

평가지표 22(21) 재난상황대응 ... 추가(3차)

Q10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미 실시한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0	<p>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면(피난안내도)을 이용하여 재난상황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별 임무 및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한 교육 및 토론형식으로 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거자료로 훈련 실시 자료(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내용, 사진)가 확인되어야 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평가지표 적용하며 세부적인 적용방법은 해당 평가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평가지표 27(26)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 추가(4차)

Q11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취소되고 있으며, 보호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드시 기관에서 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야 하나요?
A11	<p>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의 단계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행사 개최 또는 지역사회 행사 참여가 무산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p> <p>※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함.</p> <p>※ 예시 : 2020년 사업계획서</p> <p>※ 기존 2018년 매뉴얼 중 지표11(10)의 기준④에서 파생된 지표</p>

평가지표 29(28) 노인인권보호 ... 추가(4차)

Q12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2	<p>2020년 상반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하였는지를 회의록 등의 관련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p>

평가지표 29(28) 노인인권보호 … 추가(3차)

Q13	코로나19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3	2020년 상반기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이 '경계' 이상 단계에 해당되어 운영위원회를 미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만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자 대표는 시설에 거주하므로 수급자 대표에게 수급자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을 청취하거나 보호자 대표에게 유선 및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내용을 파악하여 조치하였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평가지표 29(28) 노인인권보호 … 추가(3차)

Q14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나요?
A14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은 교육방법은 반드시 집합교육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이버 강의 또는 소규모 교육 등을 통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 2021년 매뉴얼 기준 변경 사항 있어 2021.1.까지는 분기별 실시내역 2021.2월부터는 분기별 실시내역 확인

평가지표 33(32) 사례관리 … 추가(4차)

Q15	코로나19로 대면 회의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회의를 반드시 실시해야하나요?
A15	사례회의는 수급자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특성이 반영된 급여제공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시설 규모별 정기적 실시여부와 급여제공직원의 직종별 참석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특정 직종에서 자가격리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여 대체할 직원이 없을 경우 해당 직종의 의견을 다자간 영상 통화나 다자간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하여 수렴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방지 위해 회의 진행 시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 드립니다. ※ 특정 직종에서 확진자 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의견수렴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관계(관련 근거자료 등)를 확인하여 평가함

평가지표 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 추가(4차)

Q16	장기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계약의사(촉탁의)의 방문을 제한하는 경우 어떻게 평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16	<p>수급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찰해야 합니다. 다만, 기관의 감염병 관리 지침 등에 따른 외부인 출입제한으로 계약의사가 방문하지 못한 경우 등은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p> <p>※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번호(6045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계약의사 운영(안)' 참조</p>

평가지표 39(38) 간호 및 의료서비스

Q17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의사(촉탁의)가 방문할 경우 감염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수급자가 진찰을 거부할 경우 평가에서 인정되나요?
A17	<p>계약의사(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계'·'심각' 단계에서 방문하지 못하여 평가기준을 미달한 경우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 '주의'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변경된 익월부터 지표 적용함을 안내드립니다.</p>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7차 수정)

Q18	<p>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조치로 인한 외부인 출입 최소화로 맞춤형 프로그램 중단하였는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인정되나요?</p> <p>※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1차 수정」 안내</p>
A18	<p>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내부 직원이 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 지침 하에 (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소독실시, 사람간 거리두기 등)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실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p> <p>※ 단,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확진자,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p>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7차 수정)

Q19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프로그램을 꼭 실시해야 하나요?
A19	<p>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철저한 방역지침(마스크 착용, 프로그램 전후 환기, 소독실시, 사람 간 거리두기 등) 하에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합니다.</p> <p>※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확진자 관련 기록 확인하여 프로그램 미제공 예외 인정</p>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7차)

Q20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 확산으로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프로그램(기능향상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기관평가 시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20	감염사태 확산우려로 인한 지자체 및 보건소의 조치로 시설 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실시계획과 객관적인 근거자료 (지자체 및 보건소 공문 또는 공지사항(안내문, 메일 등) 외부 증빙 자료)등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단, 외부 증빙 자료 없이 내부 문서 등을 통한 자체 중단은 인정하지 않음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4차)

Q21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미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A2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공 그룹을 소규모로 재편성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 수급자(보호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평가함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 추가(2차)

Q2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출입을 제한하고 내부직원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감염확산의 우려로 수급자(보호자)가 거부하는 등 그룹별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데 이 경우 프로그램을 미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A2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하며, 기존의 실시계획과 실시연기·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안내)사항 발송 등 기관에서 조치한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평가지표 43(41) 인지기능증진서비스, 44(42) 여가활동서비스

Q23	코로나19 관련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경우 프로그램을 미 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23	프로그램 외부강사의 출입제한으로 인해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 직원이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수급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합니다.